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28호

우편법 제38조,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,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실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6월 8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

1.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

종 류 별	손해배상의 범위	배 상 금 액
등기우편물	o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	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(등기료 제외)
	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	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
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	o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	262,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(등기료 제외)
	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	262,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
보통소포우편물	o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	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
	o 일부 분실·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	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
보험서장 및 보험소포우편물	o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	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(보험취급수수료 제외)
	o 일부 분실·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	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
국제특급우편물	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	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국제특급우편요금
	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	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
	o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·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	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
	o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·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	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(보험취급수수료 제외)
	o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,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	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(보험취급수수료 제외)

2.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

실비지급의 범위	지급액	비 고
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·분실 발생시	무료발송권(1회 10kg까지)	EMS 고객불만 보상제 시행 반영
종·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 이상 지연시	무료발송권(1회 3만원권)	상 동

부 칙

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-43호(2005.11.29.)는 폐지한다.